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38호
2019. 6. 7.(금)

차 례

고 시(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75호)1
- 도시관리계획(송촌어린이공원 조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9-76호) ...2

공 고(1)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518호)6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입법예고(공고 제2019-524호)8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비래동 510-6	비래서로26번길 11	2019. 6. 7.	건물신축	비래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시관리계획(송촌어린이공원 조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75-1번지(송촌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후된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켜 주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송촌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촌어린이공원 조성)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송촌어린이공원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	-	송촌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송촌동 475-1	2,020.8	대전광역시 고시 제88호 (1998.6.13.)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송촌 어린이공원	○ 시설면적 : 증) 264.1㎡ ○ 녹지면적 : 감) 264.1㎡	○ 공원 이용패턴 및 이용률 고려, 협소한 광장 확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이전설치 등 시설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20.8	2,020.8	-	-	-	-	-	-	-	-	
시 설	800.2	1,064.3	증 264.1	-	-	-	-	-	-	-	
녹 지	1,220.6	956.5	감 264.1	-	-	-	-	-	-	-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20.8	2,020.8	-	100.0	-	-	-	-	-	-	-		
계	800.2	1,064.3	증 264.1	52.67	-	-	-	-	-	-	-		
기 반 시 설	소계	469.1	837.2	증 368.1	41.43	-	-	-	-	-	-	-	
	도로	201.1	368.7	증 167.6	18.25	-	-	-	-	-	-	-	
	광장	268.0	468.5	증 200.5	23.18	-	-	-	-	-	-	-	
조경시설	-	64.0	증 64.0	3.17	-	-	-	-	-	-	-		
휴양시설	47.1	37.4	감 9.7	1.85	-	-	-	-	-	-	-		
유희시설	176.0	93.4	감 82.6	4.62	-	-	-	-	-	-	-		
운동시설	108.0	32.3	감 75.7	1.60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녹 지	1,220.6	956.5	감 264.1	47.33	-	-	-	-	-	-	-		

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사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020.8	2,020.8	-	35	24	-	-	-	-	-	-	
시설소계			800.2	1,064.3	증 264.1	35	24	-	-	-	-	-	-	
도로 및 광장		소계	469.1	837.2	증 368.1	-	-	-	-	-	-	-	-	
		도로	201.1	368.7	증 167.6	-	-	-	-	-	-	-	-	
	1-1	중앙광장	268.0	190.5	감 77.5	-	-	-	-	-	-	-	-	
	1-2	휴게광장	-	84.6	증 84.6	-	-	-	-	-	-	-	-	
	1-3	휴게광장	-	193.4	증 193.4	-	-	-	-	-	-	-	-	
조경 시설		소계	-	64.0	증 64.0	-	1	-	-	-	-	-	-	
	2-1	바닥분수	-	64.0	증 64.0	-	1	-	-	-	-	-	-	
휴양 시설		소계	47.1	37.4	감 9.7	16	10	-	-	-	-	-	-	
	3-1	휴게쉼터	47.1	37.4	감 9.7	1	1	-	-	-	-	-	-	
	3-2	파고라	-	-	-	1	1	-	-	-	-	-	-	
	3-3	평의자	-	-	-	3	2	-	-	-	-	-	-	
	3-4	조형벤치	-	-	-	-	1	-	-	-	-	-	-	
	3-5	흔들벤치	-	-	-	-	1	-	-	-	-	-	-	
	3-6	통돌벤치	-	-	-	-	4	-	-	-	-	-	-	
	3-7	등의자	-	-	-	11	-	-	-	-	-	-	-	
유희 시설		소계	176.0	93.4	감 82.6	2	4	-	-	-	-	-	-	
	4-1	놀이공간	176.0	93.4	감 82.6	1	1	-	-	-	-	-	-	
	4-2	조합놀이대	-	-	-	1	1	-	-	-	-	-	-	
	4-3	흔들놀이대	-	-	-	-	2	-	-	-	-	-	-	
운동 시설		소계	108.0	32.3	감 75.7	7	4	-	-	-	-	-	-	
	5-1	체력단련장	108.0	32.3	감 75.7	1	1	-	-	-	-	-	-	
	5-2	체력단련시설	-	-	-	6	3	-	-	-	-	-	-	
편익 시설		소계	-	-	-	-	1	-	-	-	-	-	-	
	6-1	음수기	-	-	-	-	1	-	-	-	-	-	-	
관리 시설		소계	-	-	-	10	4	-	-	-	-	-	-	
	7-1	CCTV	-	-	-	2	2	-	-	-	-	-	-	
	7-2	공원안내판	-	-	-	-	1	-	-	-	-	-	-	
	7-3	시설안내판	-	-	-	1	1	-	-	-	-	-	-	
	7-4	볼라드	-	-	-	6	-	-	-	-	-	-	-	
	7-5	웬스	-	-	-	1	-	-	-	-	-	-	-	119m
총계			1,220.6	956.5	감 264.1	-	-	-	-	-	-	-	-	

6 도로결정(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기정	3	1	3.4	16.7	64.9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4	
	변경	3	1	6.0	31.5	188.9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기정	3	2	2.8	10.5	30.4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변경	3	2	6.0	22.1	132.3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기정	3	3	6.0	5.0	30.3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변경	3	3	6.0	7.8	47.5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기정	3	4	2.0	38.5	75.5	연결로	중앙광장 1-1	중앙광장 1-1	
	폐지	-	-	-	-	-	-	-	-	
총계	기정	4	-	-	70.7	201.1				
	변경	3	-	-	61.4	368.7				

관계도면 : 게재생략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열병합발전 (주) 대표이사로부터 신청한 도로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대로 1504 일원	중온수 배관 보수	목상동 21-12 번지 앞	300	아스팔트	8.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10일)	15.2 (착공일로부터 10 일)	-

2019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목상동 21-12번지 앞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개정이유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신고포상금 환수조항을 삭제하고 신고처리 및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나. 신고방법 및 처리,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및 제6조).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

6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전화:042-608-6863, FAX:042-608-38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기후환경과 담당자 이진영(☎ 042-608-68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대덕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신고포상금 환수조항을 삭제하고 신고처리 및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신고방법 및 처리,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및 제6조).
-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
-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대전광역시 대

덕구 환경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9. 6. 7. ~ 2019. 6. 27. /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및 인터넷”을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으로, “할수”를 “할 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신고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 략) 6. 기타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p>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 략) 	<p style="text-align: center;"><u>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u></p> <p>제1조(목적) --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제20조제2항----- ----- -----.</p> <p>제3조(신고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 <p>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 할 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기타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③ (생략)

④ 동일인(단체, 법인을 포함한다)의 신고인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다.

제6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

범위-----
----- 지급할 수 있다. -----
----- 예외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삭제>

에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
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
을 환수 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신고 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 신고범위 및 방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환경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진 영 042-608-686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입법예고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